

第 87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8 3. 24. ~ 3. 2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務部)會員委員會此書 四 〇 〇

本會 會務 委員會

(2018.3.24 - 3.30)

1

會員委員會此書

목 차

1998 • 3 • 통권 제58호

I.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II.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13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5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23
4. 교육기관 방문의 건	29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8년 3월 24일 (화요일) 15시 00분

議事日程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교육기관 방문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영규)
2.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기수위원 외 3인 위원 발의)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교육기관 방문의 건(김정길위원 외 3인 위원 발의)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사회 : 의사계장 신용건)

(15시 00분 개식)

● 의사계장 신용건

지금부터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제87회-제1차]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5시 02분 개의)

●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청의 국·과장급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금학년 내에는 기필코 우리 충북교육이 전국 제일의 교육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면서 금학년도 3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된 인사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차례로 인사함)

먼저 중등교육국장으로 부임한 진천상업고등학교 교장에서 중등교육국장으로 부임한 최성태장학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연구원 지도보급부장으로 있다가 초등교육국 교직과장으로 부임한 유승덕장학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실업교육담당장학관으로 있다가 과학기술과장으로 승진된 윤주택장학관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있다가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승진한 윤본원장학관을 소개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과보고

(15시 05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8년 3월 14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

구되어 3월 16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98-3호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신 바 있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8년 2월 21일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금회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과 교육기관 방문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2.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시 07분)

● **의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으로하여 이기수위원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김정길위원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교육기관 방문의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3월 25일은 교육기관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9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이기수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7회-제1차]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새로이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본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및 제7조 그리고 별표 1의 내용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용어의 표기를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과 같도록 변경하는 것이며,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비교내용 중 종전 국외여비규정 별표 2를 적용하였던 것을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 4를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외 3인 위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 **의장 김광수**

이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2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광수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비의 종

류에 준비금 등을 참고하고 용어를 공무원
여비규정과 동일하게 표기하였으며, 둘째,
종전의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
용하였던 것을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
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
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3월 26일에 제2
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교육기관 방문의 건

(15시 13분)

●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관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김정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정길 위원

김정길 교육위원입니다.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대상 기관은 청주시소재 신설
학교인 경덕중학교, 원평초등학교, 원봉초
등학교, 이상 3개교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신
축 개교한 대상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통
한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방문기간은 내일 1일간이 되겠으며 출발
및 방문기간 등의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외 3인 위원이 공동발
의한 교육기관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4

(끝에 실음)

(김정길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광수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분 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7회-제1차]

<p>의의가 없으므로 교육기관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의의가 없으므로 제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조일환, 이근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5시 16분)</p> <p>● 의장 김광수</p> <p>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p> <p>순서에 따라 조일환, 이근수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분 계십니까?</p> <p>(“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p>	<p>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p> <p>내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교육기관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p> <p>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p>이상으로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p> <p>(15시 17분 산회)</p>																		
<p>0 출석위원 : 10명</p> <p>의장 김광수, 부의장 안병일, 위원 김정길, 조일환, 정만재, 이기수, 박재현, 이근수, 신용철, 이경윤.</p> <p>0 출석공무원 : 17명</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교육감 김영세,</td> <td>부교육감 구관서,</td> <td>초등교육국장 민병구,</td> </tr> <tr> <td>중등교육국장 민병구,</td> <td>관리국장 신재철,</td> <td>공보담당관 신춘우,</td> </tr> <tr> <td>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td> <td>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td> <td>초등교직과장 유승덕,</td> </tr> <tr> <td>중등장학과장 이재관,</td> <td>중등교직과장 김영기,</td> <td>과학기술과장 윤주택,</td> </tr> <tr> <td>사회교육체육과장 윤본원,</td> <td>총무과장 고일영,</td> <td>행정과장 이기수,</td> </tr> <tr> <td>재무과장 김홍묵,</td> <td>시설과장 박성근</td> <td></td> </tr> </table> <p>※ 부 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일정(안) : 별첨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 ▶ 교육기관 방문의 건 : 별첨4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민병구,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신춘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초등교직과장 유승덕,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윤주택,	사회교육체육과장 윤본원,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김홍묵,	시설과장 박성근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민병구,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신춘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초등교직과장 유승덕,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윤주택,																	
사회교육체육과장 윤본원,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김홍묵,	시설과장 박성근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8년 3월 26일 (목요일) 11시 06분

議事日程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기수위원 외 3인 위원 발의)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6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안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의 회의 진행을 본인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

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 의장직무대행 안병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87회-제2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이기수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 의장직무대행 안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계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전체 교육위원이 청주시 관내 신설학교 3개교를 방문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교육위원회 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세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0 출석위원 : 10명

부위원장 안병일, 위원 김정길, 조일환, 정만재, 이기수, 박재현,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5명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민병구,
공보담당관 신춘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초등교직과장 유승덕,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윤주택,	사회교육체육과장 윤본원,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김흥묵,	시설과장 박성근.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87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8.3.24. ~ 3.26. (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98.3.24.(화)</p> <p>14:00</p> <p>15:00</p>	<p><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p> <p><input type="checkbox"/> 개회식</p> <p>[제1차 본회의 개의]</p> <p>1. 제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8. 3. 24. ~ 3. 26. (3일간)</p> <p>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p> <p>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p> <p>4. 교육기관 방문의 건(제안설명)</p> <p>[제1차 본회의 산회]</p>	
<p>'98.3.25.(수)</p>	<p><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 방문</p> <p>· '98년도 신설학교 : 청주시 소재 3개교</p>	본회의 휴회
<p>'98.3.26.(목)</p> <p>11:00</p>	<p>[제2차 본회의 개의]</p> <p>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p> <p>[제2차 본회의 산회]</p> <p>※ 폐 회</p>	

(별첨 2)

의안번호	제 87 - / 호
의 결	1998. 3. 26.
연 월 일	(제 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 기 수 교육위원 외 3인
발의년월일	1998. 3. 1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87 - / 호
----------	------------

발의년월일 : 1998. 3. 16.
발 의 자 : 이기수 교육위원외3인

개정사유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 ; '98. 2. 24.)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종전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고치는등 용어를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과 같도록 표기하였음. (안 제5조, 제7조 및 별표1)
- “국외여비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을 동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음. (별표2 중 비교1)

개정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 : '98. 2. 24.)

조 례 안 : 덧붙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

<별표 1>중 “숙박료(1야당)”를 “숙박비(1야당)”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1중 “국외여비규정<별표 2>”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내지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 숙박료,식비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제5조(여비의 종류) ①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	②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① (생략)	제7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①	제7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위원회사무실 소재지로부터 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일비를 제외한다)·숙박료 및 식비(3분의 1)를 지급한다.	②	②
③ (생략)	③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8조 내지 제10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철도은임	선박은임	항공은임	자동차은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인장	1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위 원	1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1. 철도은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은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 에 해당하는 철도은임을 지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철도은임	선박은임	항공은임	자동차은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인장	1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위 원	1 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1. 철도은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은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 에 해당하는 철도은임을 지급한다.							
<별표 2> (표 생략)		<별표 2> (표 생략)					
비고 : 1. 일비·숙박비·식비의 등급 구분은 <u>공무원여비규정<별표 2></u> 의 비교란에 정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적용한다.		비고 : 1. <u>공무원여비규정<별표 4></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별표 6>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표 생략)

<별표 7>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 (표 생략)

□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 ; '98. 2. 24.)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부 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별첨 3)

의안번호	제 87-2호
의결 년 월 일	1998. 3. 26. (제 87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8. 3 . 14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제 87-2호
--------------	---------

제출년월일 : 1998. 3 . 14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 15,680호, '98. 2. 24)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에 준비금 등을 첨가하고 용어를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하게 표기 하였음(제2조)
-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였던 것을 동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음(제3조)

□ 개정근거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680호. '98. 2. 24.)

□ 조 례 안 : 덧 붙 임

□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 붙 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 붙 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구분한다."를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 한다."로 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680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생략)</p> <p>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u>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여비</u>로 구분한다.</p> <p>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u></p>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여비의 종류) - - - - - <u>숙박비, - - - - -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u> 등으로 구분한다.</p> <p>제3조(준용) - - - - - <u>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680호, '98. 2.24)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부 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별첨 4)

의안번호	제 87 - 3호
의 결 연 월 일	1998. 3. 24. (제 회)

교육기관 방문의 건

발 의 자	김 정 길 교육위원 외 3인
발의년월일	1998. 3. 16 .

교육기관 방문의 건

의안 번호	제87-3호
----------	--------

발의년월일 : 1998년 3월 16일
발의자 : 김정길 교육위원 외 3인

1. 주 문

제 87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중 1998년도
신설학교를 다음과 같이 방문한다.

가. 방문기간 : 1998. 3. 25. (1일간)

나. 대상기관 : 청주시 소재 3개 학교

- 원봉초등학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원평초등학교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 경덕중학교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다. 방문일정 : 붙임과 같음

2. 이 유

가. 신설학교 시설현황 파악

나.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자료수집

교육기관 방문일정

일 자	시 간	활 동 내 용
'98. 3.25.(수)	10 : 00	○ 교육위원회 출발
	10 : 20	○ 청주교육청 방문 (40 분간)
	11 : 00	○ 청주교육청 출발
	11 : 20	○ 경덕중학교 방문 (30 분간)
	11 : 50	○ 경덕중학교 출발
	12:00 ~ 13:30	○ 중 식 (1시간 30분)
	13:30 ~ 14:00	○ 중식 후 이동
	14 : 00	○ 원평초등학교 방문 (30 분간)
	14 : 30	○ 원평초등학교 출발
	14 : 50	○ 원봉초등학교 방문 (40 분간)
	15 : 30	○ 원봉초등학교 출발
	15 : 40	○ 교육위원회 도착 (일정 종료 : 해산)

